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2 | 2025.09.29 (2025.09.22~2025.09.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②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③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권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채권발행 방식을 규정하는 등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는 등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업무 유형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역할·위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통합법안(김재섭의원 등 10인)**」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의원 등 12인)**」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의원 등 10인)**」 ,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고동진의의원 등 14인)**」 ,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4인)**」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2인)**」 ,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 ,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환노위> 등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공정거래위원회) 7
-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발표(국무조정실)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15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15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16
- 디지털자산통합법안(김재섭의원 등 10인) 1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7인)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18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의원 등 13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1
•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의원 등 14인)	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22
•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4인)	23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2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5인)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5
•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	2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2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조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 [노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 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쉼 단계에서 본부-점주간 구조적 불균형 시정	2025-09-23
---------	---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이번 대책은 크게 ①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②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③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되었음

① 창업 단계 :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 “안전한 창업”

- ① 먼저,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하여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
- ② 또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
- ③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하여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

② 운영 단계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 “대등한 운영”

- ①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 ② 또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의무화). 다만,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
- ③ 아울러,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집행도 강화.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 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

③ 폐업(계약갱신) 단계 :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 “부담 적은 폐업”

- ① 먼저,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음.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
- ② 또한,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 우선,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

국무조정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발표

- (모빌리티)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 (스마트도시)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 (순환경제) 농산부산물 재활용 소재 및 유형 확대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
- (ICT)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산업융합)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 (산업융합)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
- (산업융합)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2025-09-25

국무조정실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함.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고 밝힘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음.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음

- ①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여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으로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모빌리티 샌드박스)

- ② 현행법상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됨 (스마트도시 샌드박스)
- ③ 농산부산물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 범위가 제한되었음. 앞으로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가능 (순환경제 샌드박스)
- ④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실증으로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 자동화를 도움 (ICT 샌드박스)
- ⑤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되었음. 앞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 (산업융합 샌드박스)
- ⑥ 기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 절차를 간소화 (산업융합 샌드박스)
- ⑦ 어업권은 임대차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유희여장을 공동이용하여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도움 (산업융합 샌드박스)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5-09-25 시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할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냉동딸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로니켈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26 시행
---------	---	---------------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23 시행
-----	--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소매업자인 경우로서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차수별로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9-26 시행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표시를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확인 신청서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이 그 표시를 한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23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이 그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주식 관련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 및 해당 유통플랫폼을 운영할 때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을 신설하며, 소액투자자가 장외거래시장에서 비상장주식 또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출공시를 면제하는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규제특례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9.22. ~2025.11.3.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25. ~2025.11.5.
-------	-----------------------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전화: 044-201-3830, 팩스: 044-201-558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22. ~2025.11.3.
-------	----------------------------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주요 내용은

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 (제43조)

-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tel:02-2100-2631) (전화: 02-2100-2631, 팩스: 02-2100-2999)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26.
~2025.11.5.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개정, 시행 2025. 12. 1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 규정 (안 제28조의6, 제28조의 7)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발행 방식 규정 (안 제28조의8)

-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채권의 발행방식 규정함

③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안 제28조의 10)

-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8조의 12)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tel:02-2100-2879) (전화: 02-2100-2879, 팩스: 02-2100-287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26.
~2025.11.5.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tel:02-2100-2691) (전화: 02-2100-2691, 팩스: 02-210-267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2025-09-24 발의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후 의도적으로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3년 연속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전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출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출석요구서 송달체계 구축과 비대면 환경을 반영한 원격영상출석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 증인의 출석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설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2025-09-23 발의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후 본안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소 우려가 기우였음이 드러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 이해 부족, 내부통제 미비, 과도한 수익 중심 영업관행으로 불완전 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하고,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가 이원화되고 소송허가제 결정으로 3심, 본안 판단에 3심 등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2025-09-15 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지급·투자 혁신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바꾸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규제와의 차이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2025-09-23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47조)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통합법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025-09-25 발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임.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적 관점의 논의보다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Web 3.0 생태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업무 유형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역할·위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산업·이용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7인)

2025-09-25 발의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4조제1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2025-09-26 발의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5-09-22 발의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3 등)

기획재정위원회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의자의원 등 13인)

2025-09-23 발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2인)

2025-09-23 발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5-09-24 발의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09-24 발의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 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 14조제3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9-25 발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함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36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025-09-22 발의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에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5-09-26 발의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의원 등 14인)

2025-09-26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망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동통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동통신망은 최근 수년간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해킹·바이러스·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막대한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보안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이용자의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2025-09-24 발의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5-09-25 발의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로 진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4인)

2025-09-23 발의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육성과 지방벤처 투자 등은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AI·딥테크 투자 확대,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바,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정책 기반 자금 공급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음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실제로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민간 부문 출자는 25% 감소하였음.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 (안 제70조제4항·6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5-09-24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5인)

2025-09-22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이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76조의2 등)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9-25 발의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9인)

2025-09-22 발의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사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2025-09-22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법정 주민 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신설),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0조 개정),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안 제35조의2)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5-09-23 발의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 48조의2 및 제48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5-09-24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 신설)**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함

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독일·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6가크롬 함유량이 0.1mg/k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음. EU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허용 기준치를 2mg/kg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mg/kg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미국 기준치 5mg/kg, 중국 기준치 10mg/kg)

국내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각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말해주듯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중금속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은 검출량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특히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 6가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위험물질임

또한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새집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7 및 안 제113조제1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9/29(월) 16:00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기재위	전체회의	9/30(화) 15:00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9/29(월) 14:00	-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행안위	전체회의	10/1(수) 10: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환노위	전체회의	10/1(수) 10:00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9(월) 10:00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조인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29(월) 14:00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석기·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30(화) 10:00	[제3회 AI-DX 미래 포럼]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 상자산을 논한다	허영·안도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30(화) 13:30	드론·대드론 전력지원을 위한 한국형 AI 기술발전 포럼 : 드 론·대드론 체계 발전 포럼	유용원·부승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0/1(수) 09:30	해상풍력을 하면 뭐가 좋은데? : 전남 해상풍력의 경제·환 경·사회적 효과와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전략	서왕진·김정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0/1(수) 10:00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 :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 : 2025년도 (사)한국피지컬AI협회 출범 기념	정진욱·김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10/1(수) 14:00	(소외 없는 금융) 포용적 금융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세미나	박홍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1(수) 16:00	(플랫폼기업의 광고메시지 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 책임 을 묻다 : 플랫폼 기업의 미동의 개인정보 활용과 소비자 권 리 보호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민병덕·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9/29(월)	「Data+」 제19호(2025-19호) 발간	국회도서관	
	9/30(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8호(2025-18호) 발간		
	10/1(수)	「금주의 서평」 제748호(2025-39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22(월)	「Data+」 제18호(2025-18호)	국회도서관	
	9/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1호(2025-18호)		
	9/24(수)	「금주의 서평」 제747호(2025-38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22(월)	조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22(월)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9/25(목)	노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